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38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제2219938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3

I.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제2219938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삼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7. 14.

다. 회 부 일 : 2026. 7.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인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로 기반시설의 물리적 낙후는 물론 산업생산량 감소와 산업재해 발생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산단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해당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감소와 취업률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고용 감소 및 도심 쇠퇴 등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이어지며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는 중임.

특히 전남 영암군과 강원도 동해시, 충청북도 보은군과 충청남도 보령시 등 20년 이상 노후국가산단을 보유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국가산단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노후 산업단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임.

이에 국가산단의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와 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3. 검토의견

가.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단지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u>기반시설</u> 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 ----- ----- <u>기반시설</u> (이하 이 조에서 “기반시설”이라 한다)----- ----- -----.
<신설>	②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산업단지로서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 설치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하면서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현행법은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이처럼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지·보수 또는 개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³⁾ 내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유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는 지원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기반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며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결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을 확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법상 지원과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원 비교 】

구 분	현행 지원 (제29조의3제1항)	추가 지원 (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지원대상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u>인구감소지역의 준공 후 20년 이상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u>
지원요건	안전상 필요한 경우	<u>지역발전·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경우</u>
지원내용	기반시설 유지·보수·개량	
지원범위	비용의 일부	비용의 <u>전부</u> 또는 일부

※ 자료: 현행법 및 법률안 내용 정리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로, 이들 지역은 전체 국토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합산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도 매년 큰 폭으로 감소⁴⁾하고 있음.

이처럼 인구감소지역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세 세입이 축소되어 노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적기에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

4) 인구감소지역은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1.23%씩 인구가 감소하였고,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매년 0.27%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을 수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기업 이탈과 고용 감소
 소를 초래하여 다시 인구감소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노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산업·고용 기반을
 유지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현황 】

국가산업단지	소재지	조성상태	준공·부분준공	개정안 적용 여부	비 고
대불	전남 영암군	준공	1995년(1단계) 1997년(2단계)	○	
보은	충북 보은군	조성 중	-	×	
고정	충남 보령시	조성 중 (단계별 개발)	1990년(1단계) 2002년(2-1단계) 2019년(2-2단계) 2022년(2-4단계)	일부 가능	잔여 단계 개발 중 (2-3, 2-5단계)
장항국가생태	충남 서천군	조성 중 (단계별 개발)	2020년(1-1단계) 2021년(1-2단계) 2024년(2-1단계)	×	잔여 단계 개발 중 (2-2단계)
빛그린	광주 광산구·전남 함평군	조성 중 (단계별 개발)	2021년(1-1단계) 2022년(1-2단계) 2025년(2-1단계)	×	잔여 단계 개발 중 (2-2, 3단계)
밀양나노융합	경남 밀양시	준공	2024년(1단계) 2026년(2,3단계)	×	단계별 준공 완료
영주첨단배어 링	경북 영주시	조성 중	-	×	
논산국방	충남 논산시	조성 중	-	×	

※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는 8곳이고, 그 중 6곳은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며,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산업단지는 전남 영암군에 소재한 대불 국가산업단지 및 고정 국가산업단지 2곳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⁵⁾

다음으로, 개정안은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39조의2도 산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생이 필요한 산업단지 중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의 우선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연한 및 부분준공 기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⁶⁾.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 시행령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⁷⁾, 이는 국가가 한정된 예

5) 보은국가산업단지, 논산국방 국가산업단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및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6곳)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라 한다)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단지설시계획 또는 제29

산의 범위에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려는 체계로 이해됨.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과 별도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경우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비용의 전부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현행보다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제19대 국회에서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⁸⁾이 제출되어, 당시 국토교통위원회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도 국가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결(2012. 9. 21)하였으나,

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가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기반시설(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이나 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할 것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결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시설일 것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8) 이와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안 제1900210호, 주승용의원안 제1900382호, 이재영의원안 제1900691호, 전해철의원안 제1900697호)가 각각 발의되었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⁹⁾의 반대의견¹⁰⁾ 등을 반영하여 국비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2015.12. 8)된 바 있음.

【 현행법 제29조의3 개정연혁 】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안 (2012. 9. 21.)	법사위 수정안(현행과 동일) (2015. 12. 8.)	개정안
제29조의2(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하여 국가단지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2(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단지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②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산업단지로서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 설치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 現 기획예산처

10) 국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맡는다는 정부 내부 재정지원 원칙과의 불일치 및 유사 사업에 대한 과급효과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였음.

둘째,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구역만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전체가 지원대상인지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구역의 기반시설만 지원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¹¹⁾.

따라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산업단지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안 제29조의3제2항의 인용 법률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가산업단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²⁾.

11) 예를 들어 빛그린국가산업단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라남도 함평군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데, 이 중 함평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광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음.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의 노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재 인구감소지역 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는 대불·고정 국가산업단지 2곳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지원대상도 상당 기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¹³⁾.

문 의 처

02)6788-5579

12) 개정안 제29조의3제1항은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이하 같은 조에서 “기반시설”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의 “기반시설” 역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다만,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는 대불(31년)·고정(36년) 2곳이며, 장항국가생태(6년), 빛그린(5년), 밀양나노융합(2년) 국가산업단지 등은 향후 상당 기간 20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